

- 8. 19. 민주당 인권위원장과 전노협, 8월 12일 현대정공 홍보부장 김재갑씨 집에서 고성능 소형 도청기가 발견되자 도청기를 설치한 수사관을 고발.
- 10. 4. 국정감사자료, 체신부의 우정연구소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우편물을 검열해 불온유인물이라고 적발한 우편물 수가 5만8천9백65통, 하루 평균 1천9백2통에 이르러 지난해 하루 평균 적발량보다 28%나 늘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우편검열이 크게 강화됐던 것으로 추정. 한편 불온우편물로 적발된 우편물은 △북한이나 조총련 등의 주소가 적힌 것 △이들이 사용하는 구호·용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1. 12.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협상을 벌여 내국인 간의 서신·통화에 대한 안보 목적의 검열·감청을 할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받도록 결정.
- 11. 15. 안기부와 서울경찰청, 천리안 측에 컴퓨터 통신 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 천리안, 컴퓨터 통신망에 가입된 '현대철학동호회'방을 폐쇄.

1994년

- 1. 17. 체신부, 우정연구소 해체 양기로 해 그간의 검열기능 폐지론을 외면.
- 3. 2. 체신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동시에 우편검열을 맡고 있는 우정연구소 폐지방침 발표.

체신부, 이날 우정연구소 폐지 발표를 번복하고 기능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3. 7. 체신부, 우정연구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제출.
- 5. 16. 민주당, 16일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도청 최소화, 영장주의, 도청내용의 공개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회의 보고요구권 등 세부 실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긴급처분과 도청자료의 보존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 요구.
- 7. 27. 서울지검, '전화감청실'을 검찰청사 안에 설치. 전화감청실은 검찰이 법원에서 '통신제한 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전화국에서 감청대상자의 전화선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9. 30. 서울경찰청 보안부, 지난 7월 하이텔 '전대기련 동호회' 게시판에 "김일성 주석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조국을 위한 당신의 삶을 보며 우리의 자세를 돌아본다"는 등 김주석 사망 애도문건을 올린 '전대기련 동호회' 대표 김태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구속.
- 10. 13. 한국통신 전남사업부, 국회 체신과학기술위에 낸 국감자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94. 6. 27.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전화감청 18건 중 안기부가 17건을 집행했다고 밝힘. 한편 안기부 전화감청 내용중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은 1건이고 범죄 수사 관련 감청이 16건"이라고 밝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에 수사권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전화감청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힘.

1995년

- 5. 19. 서울 방배경찰서,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한다는 구실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희씨(홍익대)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을 도청하고 연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재현씨 등의 집을 영장없이 불법가택수색을 벌이고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미행함.
-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소장기수 박정숙, 김선분씨의 자택에 도청장치가 설치된 사실과 관련 수사관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6. 1. 한국통신공사, 자회사인 한국PC통신에 "한국통신 노조의 대화방을 폐쇄시켜달라"는 공문을 발송.
- 6. 2. 한국PC통신, 한국통신노조가 개설한 'KTTU' 대화방에 게재된 유덕상 위원장의 메시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6. 1. 유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내린 투쟁지침 2호를 삭제.

- 6. 6. 한국PC통신, 회사약관에 따라 한국통신노조의 대화방 폐쇄.

8.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

1993년

- 3. 19. 서울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의 금지통고를 제한키 위해 이의 신청 시 해당관청이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그간 접수된 13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남.
- 6. 10. 통일원, 93. 5. 10. 한총련이 요청한 '남북대학간 자매결연문제와 95년도 조국통일실현방안을 위한 남북대학생관문점 예비회담'을 불허하기로 결정.
- 8. 10. 민변과 기독교 인권위,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판단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집시법의 사전금지 조항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
- 8. 11. 경찰, 범민족대회 원천봉쇄 발표.
- 8. 12. 정부, 범민족대회 불허방침에 따라 개최장소인 연세대를 원천봉쇄하고 범추본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1995년

- 2. 18. 서울경찰청,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던 '세 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시민대회'에 대해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 금지 통고.
- 3. 6.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경찰청이 2. 18. 미군헌병의 '한국인 모녀 불법 감금·폭행사건에 대한 항의집회'를 불허한 것은 "경찰청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교통혼란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집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침해"라며 서울고법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출.
- 5. 16. 통일관계장관회의, 남북교류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며 민간차원의 통일 논의나 행사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정치성 행사나 전국 규모의 옥외행사, 판문점 행사 등은 불허한다고 발표.
- 5. 29. 서울경찰청,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6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개정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에 대해 폭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 5. 30.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내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운동본부쪽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

9. 접견, 청원권과 관련.

1993년

- 5. 22. 시국재소자 6명, 안양교도소 당국이 소내 운동시간을 1-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일요일 접견을 금하자 5. 20.부터 단식농성 시작. 한편 교도소 당국은 백태웅씨 등 공안사건 관련자 3명을 21일 원주교도소 등에 이감조치하고 태재준씨 등 4명을 징벌방에 격리 수용.
- 8. 6. 시국재소자 8명, 지난 8. 3.부터 청주교도소 당국의 신문검열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 10. 20. 법무부, 재소자 처우와 관련 인권침해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어 온 감식, 운동금지, 도

서열독금지 등 일부 징벌규정의 폐지를 적극 검토.

· 10. 22. 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잡지 구독 허용과 양심수의 종교활동 금지 철회, 서적 검열 완화 등을 요구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

1994년

· 1. 19. 영등포교도소, 교도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석진씨를 징벌 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30일간의 운동·독서·만화 금지처분을 내리고 박씨의 손발을 오랏줄로 묶고 수갑을 2개 채운 채 징벌방에 수용.

· 2. 6. 시국재소자 6명, 군산교도소측의 면회 횟수와 면회시간 축소에 항의하며 8일째 단식농성 중.

· 2. 23. 경찰청 보안국 홍제동 분실, 노해투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태성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경찰이 접견내용을 청취하는 등 비밀보장원칙을 무시해 이씨의 변호인인 김한주 변호사 접견 도중 퇴장. 또 이날 조용찬·주태봉씨 등 다른 노해투사 관련 구속자를 만난 김선수 변호사의 접견장소에도 수사계장을 입석시켜 접견내용을 파악.

· 3. 22.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도서출판 '일빛' 대표 이성우씨에 대한 이종걸 변호사의 비밀접견권을 침해. 이변호사 접견을 중단하고 퇴장.

· 5월. 청량이경찰서, 89년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이세균씨에게 "출소한 장기수와 함께 기거하고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장기수 8명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것"을 문제삼아 '피보안 관찰자와의 회합 경고와 회합 금지 조치서' 발송.

· 5. 16. 대전교도소, 김선명씨 등 5명에 대한 조용환 변호사의 접견신청을 거부.

· 6. 14. 대전교도소, 김선명씨에 대한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의 후아나(78), 아우로라(69) 등의 면회신청을 "행형법상 친족이 아니면 면회할 수 없다"며 접수자제를 거부.

대전교도소, 조용환 변호사 등이 접수시킨 김선명씨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 등 소송서류에 대한 무인증명원 발부를 거부.

· 6월.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에 대전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질의서 발송.

· 6. 24. 광주교도소, 박동운씨 등 장기수 5명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대구교도소 등에 강제이감조치.

· 6. 25. 대전교도소, 조용환 변호사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접견 등 모든 처우는 소장에게 권한이 있고 김선명 등 4명의 재소자가 재심청구나 변호인 선임 의뢰를 한 바 없어 불허하였다"고 주장.

· 6. 27. 대전교도소, 송갑석씨 등 시국사건 관련 재소자들 3명의 안기부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 접수를 가족에게 위임하는 무인증명원 접수를 거부.

대구교도소, 수용실태의 시정과 구매물품 교체를 요구하며 청원권을 행사하려는 강용주씨를 안동교도소로 강제이감 조치.

· 7월. 백승현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에 대한 대전교도소 당국의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 8월. 장흥교도소, 시국재소자 은재형씨 청원서 신청 거부.

· 8. 6. '김청동' 구속자 가족, 6. 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및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8. 7. 강용주씨 등 8명, 비전향자라는 이유로 종교집회 참여 불허 등 비전향수에 대한 안동교도소 당국의 차별처우에 항의하며 단식농성.

· 8. 20. 제주교도소, 남진현씨에 대한 최병모 변호사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

· 8. 28. 전주교도소, 신귀영씨에 대한 천주교 인권위 관계자의 접견신청을 불허.

· 9. 9. 대전교도소, 오창래씨 등 천주교 인권위 관계자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희철씨에

대한 접견신청을 불허.

- 11. 5. 전주교도소 시국재소자 20명, 집필권 보장과 필기도구 지급을 교도소 당국에 요구하며 8일간 단식농성.
- 12. 12. 공주교도소 시국재소자, 교도소 당국에 필기도구의 보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995년

- 1. 27. 광주교도소, 접견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윤정씨 등 시국관련 및 일반 여성 재소자 49명이 3일째 단식농성중.
- 3. 2. 영등포구치소, 당뇨병으로 매일 인슐린 투여를 받아야 하는 재소자 이범식씨의 치료요구를 묵살해 중태에 빠뜨림.
- 3. 4. 김삼석씨, 2. 9.부터 3차례 대전교도소측에 사상전향제 폐지와 재소자 처우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호소하기 위해 재소자 청원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불허하여 11일째 단식농성중.
- 5. 10. 제주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경옥씨 등 2명에 대한 최병모 변호사의 비밀접견권을 침해.
- 6. 13. 최병모 변호사, 94년 8월 구속수감중인 남진현씨에 대한 접견권을 거부한 제주교도소 조성용과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고경옥씨에 대한 비밀접견권을 침해한 제주경찰청 보안 2계 고성용 경위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6. 16. 천주교인권위 소속 신부 등 7명, 교도소측의 접견 거부와 관련 법무부 장관 면담.

10. "양심선언"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1993년

- 전북장수교육청, 국교에서의 성추행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전북 장수군 장계국교 김혜숙교사에게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경위서를 요구.
- 전북도교육청, 김혜숙 교사를 "김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던 날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남원교육청 관내로 전격 전보발령.
- 9. 6. '한겨레신문'에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해 "보고서 공개를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됨.
- 12. 30. 서울고법 특별 2부, 93년 3월 14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군부재자투표부정을 폭로한 이 지문씨에 대한 팸전은 부당하다고 판결.

1995년

- 2. 17.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관권선거 부정을 폭로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와 전 연기군 민자당지구당위원장 임재길씨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죄판결.

11. 출판 관련

1994년

- 3. 19. 서울경찰청, '일빛' 출판사 사장 이성우씨를 91년 2월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념서적을 제작판매해 온 혐의로 구속. 또한 출판사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

· 3. 24. 서울경찰청 보안2과,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씨를 89년부터 93년까지 <청년학생운동><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등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한 책자를 출판한 혐의로 구속.

·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단체, 소설 '태백산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

· 4. 19. 서울경찰청, '우리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를 북한의 리택진이 지은 '용해공들' 출판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영장없이 연행, 일터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

· 4. 24. 야당, 공선협이 발표한 군의 금서목록 지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 학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련자 처벌 요구.

국방위 소속 권노갑 의원, 공선협이 발표한 군의 <선거업무 추진지침><건강한 부대 관리><건강한 부대관리를 위한 장병순회계획적극추진>등의 문건과 관련 최세창 국방부장관에게 작성부서와 전국하달여부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 제출.

· 6. 10. 서울경찰청,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를 87. 12.부터 89. 4 까지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모두 4권의 출판한 책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으로 긴급구속.

· 8. 6.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북한에서 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해 시판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을 압수수색하고 <세기와 더불어> 1만5천부를 인쇄한 '경문인쇄소'에 압수수색을 실시.

· 8. 20. 서대문경찰서,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 8.22~23. 충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청주시 북문로2가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대형서점에서 1백 80여권의 '금서목록'을 들이대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20여종 30여권의 책을 압수.

· 8. 29. 서울경찰청, 북한 소설과 재미동포의 북한방문기 등을 출판한 도서출판 '살림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 8. 30.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지난 92년부터 북한에서 나온 소설 <벗><쇠찌르레기><종군기>와 재미동포 화가인 황정자씨가 쓴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 등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 8. 3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 9. 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출판사인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

· 9, 7, 고등학행 잡지 『새날열기』 편집장 정동익씨를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 9. 13.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 5종을 출판하려 한 윤영수씨 등 출판업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토론회 자료집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끄으으으으으으!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정치·사상적 요인을 중심으로 -

조용완(석사과정)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역사적으로 살펴본 출판물에 대한 정치·사상적 규제
 - 1. 규제의 기원
 - 2. 통일신라시대
 - 3. 조선시대
 - 4. 일제시대
 - 5. 군사정권 시기
 -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 III. 1990년대 대표적인 출판물에 대한 정치·사상적 규제
 -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규정
 - 1. 법률규정과 이적표현물 심의·선별 작업
 - 2. 1990년대에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 적용된 사례
 - 3.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를 특정 계급이 독점하였고, 일반 국민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에서 대부분 소외되었다. 그것은 절대군주나 지배 계급이 지배하는 시대에 가능한 일이었다. 절대군주나 지배계급은 피지배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들의 권위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변하고 있다. 역사는 몇몇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다수 국

민들에게 옴아오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 또한 특정계급의 독점에서 다수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지식·정보와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인 출판물을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없이 생산, 유통시킬 수 있다.

많은 신생국과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국 헌법의 기초가 된 유엔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¹⁾은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식과 정보를 간섭없이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제공받을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지식과 정보를 간섭없이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²⁾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저작권 등의 보호]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보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권력이 종속된 독재사회와는 달리, 자

1) 유엔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UN 제5회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조상암 편저, 『법전』. 현암사, 1998. 5319쪽.

2) 오세경 편저, 『대법전』. 법전문문화사, 1998. 1-4쪽.

울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대표적 전달 수단인 출판물의 형태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문과 사상의 핵심적 매개체인 출판물이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아무런 간섭없이 자유롭게 생산·유통·제공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참혹한 일제 침략기를 거쳐 30년 넘게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아왔다. 길고 암울했던 시대를 지나고 우리는 몇년 전까지 “문민정부”를 보았고, 지금은 “국민의 정부”에 와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천년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에도 우리는 암울했던 지난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자주 겪고 있다.

이른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에도 진주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이 쓴 교양수업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1세대』 등에 대한 이적표현물 시비, 대학가 주변의 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 대표에 대한 구속,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판사 대표 구속, 기존 출판물의 내용을 PC통신 게시판 등에 게재한 사람이 구속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것과는 달리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이 차단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

이 글은 출판물의 자유로운 흐름이 규제당하는 사례들 중에서 특히,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규제당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저해요인들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 부당성에 대해 밝히고, 출판물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역사적으로 살펴본 출판물에 대한 정치·사상적 규제

1. 규제의 기원

출판물의 규제는 국가나 체제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위엄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게 한다는 이유로 행해진다. 특정 서적의 내용이 기성체제에 도전하는 위협으로 간주될 때 그 책은 탄압의 대상이 되어 금서조치를 당하게 된다. 지적인 선각자들은 기성권위와 사회현실에 대하여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이 현실의 여러가지 제도와 이해관계, 기득권 세력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됨은 거의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저술은 대부분 그 시대에 논쟁의 초점이 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³⁾

3) 김삼웅, 『금서: 금서의 사상사』. 백산서당, 1987, 14쪽.

중국의 진시황은 인류 최초의 분서(焚書)사건인 분서갱유를 일으켰는데, 황제의 절대적 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책을 불살라 버리고, 그 이듬해에는 유학자 460명을 산 채로 한 구덩이에 매장시켰다. 아랍 왕 오마루 I 세는 이집트를 원정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문고의 장서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네 군데 목욕탕에서 땀감으로 썼는데, 모조리 태우는 데만도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교황 알렉산드르 IV 세는 1501년 역사상 최초로 인쇄물의 검열제를 창시하였고, 프랑스 국왕 알리 II 세는 무허가 인쇄인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는 모든 서적의 무허가 인쇄가 금지되었다.⁴⁾

2.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 금서가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신라 제36대 혜공왕 재위시에 세워졌다고 하는 경주 고선사 서당화상탑(西堂和尚塔) 비문에 새겨진 글에서 보여진다. 또한 최치원은 고려 왕건이 송악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왕건이 반드시 왕으로 추대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신라는 쇠퇴하여 기울어가고 고려는 흥기하리라는 예언서를 지어내었다. 이에 신라왕이 노하자 그는 난을 피하여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예언서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음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⁵⁾

3. 조선시대

조선시대 금서의 기준에 대해 아이화는 다음과 같이 썼다.⁶⁾

“금서가 생기게 된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배경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심화되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피지배층이 통치세력에 맞서 변혁의 내용을 책에 적어 돌렸을 때, 지배세력은 이를 일반민중이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둘째, 그 시대의 지배이념이나 통치철학에 어긋나는 내용을 적은 책이 있을 때, 지배세력은 이단의 글로 몰아 원천적인 봉쇄를 꾀한다. 셋째, 어느 특정 인물이 국가 변란에 관계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의 저술을 일반인이 읽지 못하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갖은 서책들이 비밀리에 나돌아 통치세력을 괴롭혔으며, 각종 비기(秘記)가 피지배층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비기는 반

4) 위의 책, 15~16쪽.

5) 배창섭, 「조선시대 금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북대학교), 1993. 17쪽.

6) 이이화, 「조선시대의 금서」, 《샘이 깊은 물》, 1986. 8, 150쪽.

왕조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은밀하게 떠돌았다. 이런 비기들은 발각되는 대로 불에 태워졌다. 이런 비기가 더욱더 극성스럽게 나돈 것은 18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숙종 말년 뒤로는 민중의 동향이 앞시대와는 달리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면서부터 이런 비기 등을 조직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민중세력이 커지게 되자 관의 단속과 탄압이 가중되어 갔다.⁷⁾

4.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정치·사상적 출판물 규제에 대해 광동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⁸⁾

첫째, 일제가 실시한 도서검열정책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상용하였던 것으로서, 국민의 지적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둘째, 일제치하에서 도서검열의 주요대상은 민족주의·민주주의·공산주의 관련도서였으며, 이들 도서가 전체 검열도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일제는 한일합병을 전후한 시기 및 중일전쟁 이후부터 검열도서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평시에는 검열도서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였다.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기관으로는, 을사보호조약의 강제체결을 전후해 헌병대, 내부(內部) 경무국 경보과 및 학부(學部) 편집국이 공식적으로 도서검열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일합병과 더불어 내부 경무국 보안과에서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도서계로, 학부 편집국에서 학무국 편집과로 담당부서가 개편되었다. 독립만세운동 이후로 도서검열은 경무국 고등경찰과 검열계와 학무국 편집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경무국 고등경찰과의 업무량이 증대하면서 도서검열 전담 부서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으로 1925년에 조선총독부는 경무국의 예하부서로서 도서과를 신설하게 되었다.⁹⁾

5. 군사정권 시기

반공이데올로기와 반민주적 정권으로 점철된 현대사에서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하위법인 경범죄처벌법,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대통령 긴급조치, 계엄법, 국가보안법(과거에는 반공법이었음.) 등에 의해 너무나 쉽게 유린되어 왔다. 박정희정권부터 시작된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반민주적 성격을 폭로하는 서적 등을 경범죄처벌법, 긴급조치, 계엄법 등에 적용시키거나 그밖에 온갖 방법이

7) 김삼웅, 앞의 책, 25쪽.

8) 광동철,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1986. 58쪽.

9) 위의 글, 35~36쪽.

동원해 탄압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구상을 제시하는 진보적 이념을 다룬 서적이나 통일논의를 다룬 서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이 자행되어 온 것이다.¹⁰⁾

제5공화국시기만 보더라도 사전검열, 간행물 내용수정 요구, 판매중지 종용, 세무사찰, 압수수색, 출판사 등록의 취소와 신규등록 규제, 경범죄처벌법상의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한 구류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등 출판사 및 출판인, 저자에 대한 탄압이 행해진 한편, 납본필증 미교부에 의한 판매금지, 판매중지 종용, 서점에 대한 탄압, 광고기회의 봉쇄 등 도서유통구조에 대해서도 탄압이 행해짐으로써 실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입체적 출판탄압이 자행된 바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당시 문화공보부는 '출판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납본 즉시 납본필증 교부', ② '출판사의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을 개방' ③ '앞으로 행정제도 차원의 판금종용은 지양하고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기' 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치는 그동안 출판탄압에 적용된 비민주적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들어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¹¹⁾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992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나긴 군사정권의 터널을 벗어났다. 1993년에는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며, 1998년에는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 있었던 출판물의 규제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최근사이에는 어떤 규제들이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는지 알아보자. 이러한 규제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재 광범위한 적용은 없지만, 독소조항이 법률상 그대로 남아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는 규제가 있다. 여기에는 행정부에 의한 판매금지 지양, 납본필증 즉시 교부, 출판사 등록 문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등이 있다. 이런 규제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는 자주 쓰였고 아직 법률상 남아있지만, 절차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아직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

10)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120쪽.

11) 위의 책, 148쪽.

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인데, 아직도 출판물의 저자·발행인·판매인·독자들이 이 규정으로 구속되고, 출판사와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 규정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Ⅲ. 1990년대 대표적인 출판물에 대한 정치·사상적 규제 -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규정

1. 법률규정과 이적표현물 심의·선별 작업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제7조 5항의 법률규정¹²⁾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찬양·고무 등]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그렇다면, 특정 출판물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는 심의·선별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다.¹³⁾

첫째, 문화관광부 출판진흥과¹⁴⁾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¹⁵⁾의 심의작업으로, 가장

12) 오세경, 앞의 책, 2022~2023쪽.

13) 강영진, 「집중분석·소위 이적표현물」, 《신동아》, 제372호(1990), 520-521쪽.

14)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진흥과에서는 출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출판분야의 국제교류 증진, 출판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건전도서의 출판육성, 외국간행물 수입업의 등록과 이와 관련되는 사항이

기초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납본된 책 중에서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심의위원들이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심사해 경고·제재건의 등을 결정하며 “실정법 저촉 우려도서”일 경우, 검찰로 보내 사법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둘째, 경찰의 일선수사활동으로, 주로 대공담당 형사들이 서점과 대학가, 가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되는 책·유인물을 입수·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안기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적표현물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문제의 서적·문건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와 대검찰청 비공식적 조직인 <민주이념연구소>에서 맡고 있으며¹⁶⁾, 그 감정서는 법원에 검찰측 증거로 제출된다.

셋째,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과정인데, 이에 대한 총지휘는 대검찰청 공안기획담당 관실에서 맡고 있다. 검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기소되면,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적표현물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규정된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규정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문적 성과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그 출판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그 출판물을 읽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있다. “이적표현물” 규정은 현재 남아있는 여타의 규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기에,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2. 1990년대에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 적용된 사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에도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정치·사상적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한 이적표현물 규정

주요업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 www.mct.go.kr](http://www.mct.go.kr)를 참조.

15)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 제45조 ①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 제7조 제6호(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와 ...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36조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6) 최근에는 안기부·경찰·기무사 등의 이적표현물 수사에 대해 최종 법률적 해석을 내리는 등 <민주이념연구소>가 이적표현물 검열·분석의 단일창구로 굳혀가고 있다. 이 연구소는 재야단체나 학생운동권의 유인물 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와 인문사회과학계의 학위논문 및 도서출판물까지 이념성의 논란이 있는 문건이라면 모두 수집해 내용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1997년 12월 1일자 참조.

이외의 다른 규정들은 과거에는 국가권력에 의해 빈번히 악용되었고, 아직도 이런 불합리한 규정 자체가 폐지 또는 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90년대 이후로는 이들 규정이 적용된 사례를 자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아직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빈번한 만큼 국내외에서 인권침해라는 반발과 지탄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 적용된 사례를 민간정부가 들어선 9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대학 출판물에 대한 이적성 시비 사례

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이적성 시비¹⁷⁾

1994년 8월 3일 검찰은 89년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정진상, 장상환 등 9명이 공동 집필한 “한국사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교양강좌의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해,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체제로 규정하고 노동자 중심의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등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공동저자 9명은 “이 책은 4년 전부터 대학 정식 교재로 채택되었고,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강좌를 개설해 80년대 이후 한국사회학계에서 축적된 연구성과에 기초해 집필했다.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며, “교수들의 학문적인 성과와 연구실적 등을 정리한 책자를 학문적 비판없이 문제삼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동저자인 이창호 교수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그러나, 8월 31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는데, 그 사유는 “교재내용에 급진좌경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나, 시중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 저작이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그에 덧붙여, 이들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진보성의 큰 차이가 없으며,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 문제는 대학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7) 《동아일보》 1994. 8. 18, 8. 31, 1995. 1. 5; 《조선일보》 1994. 8. 9, 9. 13, 9. 14; 《중앙일보》 1994. 8. 31; 《한겨레신문》 1994. 8. 5; 《한국일보》 1994. 8. 4, 12. 27.

나) 광주대 전공교재 『진실인식과 논술교재』에 대한 이적성 시비¹⁸⁾

전남경찰청은 1997년 7월 11일 광주대 언론대학원장인 신문방송학과 박지동 교수를 1996년 4월 펴낸 3학년 선택과목 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이란 책에서 남한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왜곡하고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과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찬양하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출판사인 일월서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서적을 압수했다. 3개월 후, 1997년 11월 26일에 광주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박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교수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운 것은 집필 의도와 책 내용을 확대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1997년 11월 28일 법원은 박지동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광주전남교수협의회는 책의 전체 흐름으로 봐, 이적 의도는 없고, 박교수 책의 이적성 논란 자체가 학문의 자유를 유린하는 공안공세의 하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998년 1월 21일 박교수는 법원이 병보석을 허가해 석방되었다.

다)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이적성 시비¹⁹⁾

1997년 검찰은 각 대학의 사회계열 석·박사 학위논문 중 반체제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바있다.

사례2. 어린이와 청소년용 서적에 대한 이적성 시비 사례

가) 교과서에 대한 이적성 시비²⁰⁾

검찰은 1997년 10월 말 각 부처 합동공안대책회의에서 채만식의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소설, 1학년 1학기 105~114 쪽),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시, 2학년 1학기, 76쪽), 유흥준의 「월출산과 남도의 봄」(기행문, 3학년 1

18) 《동아일보》 1997. 11. 26, 11. 29; 《중앙일보》 1997. 7. 11, 1998. 1. 21; 《한겨레신문》 1997. 11. 27, 11. 29, 11. 30, 12. 4, 1998. 1. 21.
19) 《경향신문》 1997. 11. 29; 《한겨레신문》 1997. 12. 1.
20) 《경향신문》 1997. 11. 29; 《한겨레신문》 1997. 11. 29.

학기, 26~33쪽),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시, ", ", 140쪽), 고은의 「열매 몇개」(", ", 145쪽), 정지용의 「바다」(", ", 147쪽), 이영도의 「진달래」(", ", 148쪽), 이강백의 「들판에서」(희곡, ", ", 187~207쪽) 등이 교과서에 부적절하다며 교육부에 삭제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들 글의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작자의 성향이나 글에 숨겨진 의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이런 교과서 검열은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의 자문위원인 각 대학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설가 채만식은 일제 때 항일활동을, 김기림·정지용 시인은 월북·납북전력을, 신경림·고은 시인은 유신과 5공 시절 반정부활동 경력을, 유홍준 교수(영남대)의 답사기와 이영도 시인, 이강백(극작가)씨의 글은 그 내용이 반체제적 성격이라는 것을 문제삼아 검찰이 교과서 필자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기림·정지용 시인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금한 작가들이며, 신경림·고은 시인 등은 우리 문단을 이끌고 있는 원로 작가들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교과서는 제5차 교육과정개편이후 1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라며, 교육부는 이들 글이 내용상 체제 비판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과서에 글이 실리기 위해서는 연구위원회, 집필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수많은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협의·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어린이 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한 이적성 시비²¹⁾

1997년 11월 25일 검찰은 통일원 추천도서로 선정되었고, 통일원과 방송사가 함께 이 책을 토대로 통일캠페인을 벌였고,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기관지인 『민주평통』도 통일교육 도서로 소개한 바 있는 초등학생 대상의 통일교육 교재인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한국의국어대 이장희 교수와 이 책의 편집인인 (주)천재교육 김지화 편집부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책의 맥락과 논조를 검토해본 결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들어있어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지 북한의 실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21) 《동아일보》 1997. 11. 25, 11. 26, 11. 27, 12. 3; 《한겨레신문》 1997. 11. 25, 11. 27, 11. 30, 12. 3, 12. 4; 《인권하루소식》 제1022호.(1997. 12. 5)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매일 인권과 관련된 소식을 《인권하루소식》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주소는 <http://members.iWorld.net/rights/> 이다.)

검찰은 2명에 대해 3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등이 작성한 감정서를 첨부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시 “이 교수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볼 수 없어 이적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사례 3. 서점, 출판사에 대한 압수와 대표 구속된 사례

가) 『창작과 비평』에 소설가 황석영씨의 북한방문기가 실린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시인이자 『창작과 비평』의 편집주간인 이시영씨가 『창작과 비평』에 게재한 황석영씨의 북한방문기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판매한 행위는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²²⁾

나) 1997년 4월 15일 경찰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앞 사회과학 서점 3곳을 압수수색하여 단행본, 자료집, 판매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 등) 등의 혐의로 서점 대표 3명을 구속했다. 이날 압수된 책들은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소련공산당사』, 『세계민중사』, 『노동자의 철학』(거름),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둘베개), 『경제사총론』(일월서각) 등 합법출판물들로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 시내 유명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²³⁾

다) 1997년 10월 30일 경찰은 연세대 앞 “오늘의 책” 등 대학가 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점대표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혐의로 연행했다. 압수된 책 목록을 보면 『한국민중사 I, II』(풀빛출판사), 『세계철학사 I-III』(녹두출판사), 『사람됨의 철학 I』, 『북한현대사』,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녹슬은 해방구』 등 대부분 출판된 지 10여년이 지난 것들이다. 특히 압수목록 가운데 『자본론 I-III』(비봉출판사)은 8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 전공선택 과목인 ‘마르크스 경제학’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을학기 수강인원은 3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⁴⁾

같은 날,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이민재씨(도서출판 청년문예 대표)와 정우창씨(도서출판 이웃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92년 말에서 94년 말까지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 『조국통일론』 등의 사회과학서적으로 인해 기소되었다.²⁵⁾

22) 《법원공보》. 제995호(1995.7.1).

23) 《인권하루소식》. 제864호(1997. 4. 16).

24) 《인권하루소식》. 제996호(1997. 10. 30).

사례 4. 이미 출판된 내용을 PC통신 게시판에 게재한 것에 대한 이적성 시비 사례

가) 1994년 PC통신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자료실에 진상호씨가 <공산당 선언>²⁶⁾을 올리고, 동호회 게시판에 오봉욱씨의 『붉은 산 검은 피』(실천문학사)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다. 1심 판결에서는 <공산당선언>을 통신상에 올린 행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행위라고 판결했고, 2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게재한 <공산당선언>은 국립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은 역사적으로 이적성을 상실한 데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현시점에서 이를 공개한 행위가 우리사회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²⁷⁾

나) 1998년 4월 21일 PC통신에 글을 올린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1·5항)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Race and Class) 등 대학 강의 교재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학술논문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등 국내에 번역 출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다.²⁸⁾

3.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첫째,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위험적 요소가 많아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 그

25) 《한겨레신문》 1997. 10. 30; 《인권하루소식》. 제997호(1997. 10. 31).

26) 한겨레신문 1998년 6월 1일자에는 <공산당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 팸플릿으로 불리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지난 150년 동안 전세계 200여개 언어로 번역·발간돼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선언>…”. <공산당선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1991년 도서출판 새날, 1989년 백산서당, 청년사, 범우사, 1998년에는 박종철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27) 김은남, 「가상 공간 찢는 권력의 칼날」, 《시사저널》. 제370호(1996. 11. 28);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정보통신 검열 백서』. 1996, 35쪽.

28) 《인권하루소식》. 제1108호(1998. 4. 21).

리고, 표현행위가 대한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협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않고, 단지 반국가단체에 이रो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다.²⁹⁾ 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의 평화통일이념과도 충돌되는 등 그 위헌성이 너무나 뚜렷한 위헌법률이다.³⁰⁾ 그 위헌성은 앞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이란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다수의견에서도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운용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동조에 관한 조항이 그동안 부당하게 적용되어 왔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¹⁾ 이런 위헌성 때문에 일선 판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어” 위헌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다.³²⁾

둘째,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사회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는 출판물들도 공론의 장에서 토론과 비판을 거치면, 현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쪽만을 허용하는 학문적, 사상적 편견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학문이 서로 비판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수많은 학문적 성과물들의 유통이 정치적·사상적 이유로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교수 등이 편역한 「경제학개론」, 서울대 국문과 권영민 교수의 「한국근대문학과 시대정신」, 같은 과 김윤식 교수의 「한국근대화소설비판」과 같은 학문적 성과물이 금서로 판정되었다.³³⁾ 그러나, 시대가 바뀐 지금도 연구의 결과로 생산된 학문적 성과물이나 연구를 위해 읽은 학문적 성과물들이 “이적표현물”이라는 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단적인

29)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판결에서 재판관 변정수의 소수의견. 1990년 4월 2일 89헌가113결정 전원재판부, 『헌재판례집 2권(1990)』. 헌법재판소, 1991, 49쪽.

30)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대한 위헌심판 판결에서 재판관 변정수의 소수의견. 1990년 6월 25일 90헌가11결정 전원재판부, 『헌재판례집 2권(1990)』. 헌법재판소, 1991, 165쪽.

31) 박원순, 앞의 책, 122쪽.

32) 부산지법 1995. 1. 17. 선고 94고합1325판결. 판례 데이터베이스인 킹스필드 4.0(CD-ROM)에서 검색.

33) 윤재걸, 『우상의 나라』. 청사, 1986, 129쪽.

예로,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과 교과목의 기본적인 교재로 사용되는 「자본론」 역시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훌륭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³⁴⁾, 1997년 사회과학 서점 압수수색에서 압수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그 외에도 앞에서 본 사례들처럼 대학에서 교과목의 수업교재로 활용되는 여러 출판물들이 “이적표현물”로 둔갑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킨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특히 제7조 5항의 존재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란 비판을 받게 하고, 그 결과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94, 95, 96, 97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강압적인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인권위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의 완전 실현을 위한 주된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³⁵⁾ 또한, 1993년 6월 세계인권대회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와 20여개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의 악용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으며³⁶⁾, 1996년에 유명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 Watch)는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법해석상 모호함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개폐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고했다.³⁷⁾

세계는 냉전을 뛰어넘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념과 체제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냉전이라는 전근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인권과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해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이 유린당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1995년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시장을 개방시키고, 인권보호 등의 명분을 추구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기도 했다.³⁸⁾

(2) 해결방안

34) 김수행, 「자본론 금서논쟁과 한국사회」, 《월간중앙》. 제153호(1988), 537쪽.

35) 《동아일보》 1996. 3. 7; 《한겨레신문》 1996. 3. 7, 1998. 1. 31; 《인권하루소식》. 제 817호(1997. 2. 4).

36) 최영도,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와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인권과 정의》. 제203호(1993), 203쪽; 중앙일보 1993. 6. 19.

37) 《중앙일보》 1996. 12. 6.

38) 《조선일보》 1995. 9. 22.

소련과 동구의 붕괴, 북한의 국제적 고립 등으로 체제대결이 끝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은 더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혀 경제전쟁시대에 국가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그 구성요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률이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냉전시대의 종식과 남북합의서 채택 등 국내외 제반정세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은 그 존립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제7조 5항은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로 인한 공백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특별법들을 보충함으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경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등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부산지법 형사3부의 판결문⁴⁰⁾은 다양한-또는 반대되는-주의·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현물의 내용이 기존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어서 당장은 당혹스럽고 불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감하게 허용(하여)… 현실에서의 사상의 경쟁을 거쳐 현실 정치의 상황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그 상징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도라고 보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현재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여도) …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보이는바, 서구의 여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므로)… 세계화를 향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IV. 나오며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군사정권이 끝나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오늘날에도 전근대적인 출판물에 대한 정치·사상적 규제제도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39) 1988년 11월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영도, 앞의 글, 7쪽.)

40) 부산지법 1995. 1. 17. 선고 94고합1325판결. 판례 데이터베이스인 킹스필드 4.0(CD-ROM)에서 검색.

현재 남아있는 정치·사상적 규제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납본필증 미교부에 의한 판매금지, 판매중지 중용, 광고기회의 봉쇄 등과 같이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는 빈번히 활용되었고 지금도 법률적으로 남아있지만 현재에는 자주 쓰이지 않는 규정들이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규정과 같이 아직도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헌적 요소가 많아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다. 둘째, 자유로운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셋째,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킨다.

이런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시대의 종식, 남북합의서의 채택, 체제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우월성이 판명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7조 5항은 시급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인한 공백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특별법들을 보충함으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시대는 달라졌다. 수많은 “이적표현물”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많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수집·보관·서비스되고 있고, 통일원 공산권자료센터에서도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이적성” 자료와 영화를 볼 수 있다. 각 대학에서는 “이적표현물”이 교재로 이용되어 학생들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반국가단체의 수괴”의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어⁴¹⁾ 온 국민이 “취득”, “소지”, “운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안에서는 국민들이 외면하고, 밖에서는 세계가 비난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이처럼, 국내의 적으로 따들림당하는 법을 유지할 필요는 이제 없어졌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모두 기독교신자가 되지는 않는다. 불경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모든 독자를 사회주의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논리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책이 주장하는 대로만 살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은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정한 것이다. 이제는 이 단순한 진리가 제자리를 찾을 때이다.⁴²⁾ 국민의 지적 수준과 법적 생활의 성숙은 이 법이 없이도 민주주의적 질서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하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역대 정권의 주장처럼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는 실정이다.⁴³⁾

41)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박노해씨의 “사람만이 희망이다”가 교보문고 종합3위에 올랐다.(《한국경제》 1997. 7. 18.)

42) 《한겨레신문》 1994. 9. 1.

43) 리영희,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 《한국논단》. 제22호(1991), 72쪽.

< 참 고 문 헌 >

- 강영진. 「집중분석. 소위 이적표현물」, 《신동아》. 제372호. 1990.
- 곽동철.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1986.
- 김삼웅. 『금서: 금서의 사상사』. 백산서당, 1987.
- 김수행. 「자본론 금서논쟁과 한국사회」, 《월간중앙》. 제153호. 1988.
- 김언호. 『책의 탄생 I, II』. 한길사, 1997.
- 김영귀. 「금서와 분서를 통해 본 책의 수난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37집, 1994.
- 김은남. 「가상 공간 찢는 권력의 칼날」, 《시사저널》. 제370호, 1996.
- 리영희.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 《한국논단》. 제22호, 1991.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국가보안법 폐지론」. 역사비평사, 1992.
- 배창섭. 「조선시대 금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북대학교), 1993.
- 신동아 편집실. 「일정하의 금서 33권」. 동아일보사, 1980.
- 오세경 편저. 『대법전』. 법전문화사, 1998.
- 윤재걸. 『우상의 나라』. 청사, 1986.
- 이이화. 「조선시대의 금서」, 《샘이 깊은 물》. 1986, 8월호.
- 조상암 편저. 『법전』. 현암사, 1998.
- 주명철. 「프랑스 혁명전야의 독서와 금서」, 《신동아》. 제355호, 1989.
- 최영도. 「반민주적 법률의 폐쇄와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인권과 정의》. 제203호, 1993.
- 팽원순. 「출판법제와 윤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92.
- 헌법재판소. 「헌재판례집 2권(1990)」. 헌법재판소, 1991.

인권 자료실
 분류기호 자료번호
 BB 61
 등록일

IV. 餘 論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확보는 곧 國民主權主義를 實質的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연결고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行政主體가 무엇을 어떻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主權者인 國民은 널리 이들 情報를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 理論的 要求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계각국의 立法例에서도 이미 憲法理念의 具體化法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의 憲法的 價値를 갖는 基本權이라는 데에는 學說·判例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도 이 權利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情報公開請求權 내지 악세스권에 대해서는 실정법미비를 이유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情報公開請求權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입장 내지 자기와 관련된 情報과 一般的 情報를 구별하여 일반적 정보에 대한 請求權은 추상적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 등이 개진되기도 한다.³⁰⁾ 기왕에 알 권리의 基本權的 價値를 인정하고 判例도 이에 관한 매우 진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굳이 알 권리를 自由權과 請求權의 基本權으로 나누어 請求權의 基本權性을 부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이 미비된 상태하에서 理論과 判例를 통하여 수용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상 基本權을 自由權, 社會權, 參政權, 請求權의 基本權 등으로 유형화해서 특정한 基本權의 性質을 논하고 그에 따른 기본권의 내용을 살피다 보니 알 권리와 情報公開請求權을 별개로 논의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상 請求權의 基本權이란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基本權의 實現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憲法理論 및 판례상 정립된 알 권리와 情報公開請求權에 관한 논의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立法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망된다.

30) 강경근, 헌법학강론, 일신사, 1993, p.372 이하; 김문현,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 정의, 1992, 9, p.14; 홍준형,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법", 법과 사회, 제6호, 1992, p.88.

特 輯
 憲法の 諸問題
 (基本權論)

國民의 알權利와
 國益關聯報道

崇實大 法大 教授 姜 京 根

I. 大韓民國의 國家的 性格과 言論

1. 言論自由와 民主國家

民主主義란 무엇인가. 그것이 內包하고 또 지니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그의 보장형태로서의 權力分立의 의미는 어떠한가 등의 물음은 단순한 법적 관념을 넘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여기서 言論의 自由를 통하여 그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 본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資本制的인 民主國家를 그 이념적 전제로 하고 있다. 즉, 私所有權(23조 1항)과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119조 1항)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民主共和國(1조 1항)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前文)고 하여, 民主的 法治國家로서의 여러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범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상대적인 價値中立的 世界觀을 기초로 해서 자유·평등·정의라는 이념을 그 실현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민주정치는 그 과정에서 빠져서는 아니되는 자기실현과 자기통치에의 조건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優越的 地位를 점하고 있는 것이 표현자유로서 포괄되어지는 언론의 자유이다. 말하자면 이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論證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때문에 언론자유와 民主國家의 성숙도와는 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함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國益報道에 관련한 여러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점들에 귀착된다.

그러기에 어떤 점에 있어서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때에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여기서 거대화된 언론매체의 開放性(국민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自由性(언론의 내부적 자유화와 민주화) 그리고 공적 기관에 대한 국민의 情報公開請求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언론은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그에 대응한 공적인 기능이 있으며 다만 그렇더라도 國益優先, 公益優先을 이유로 언론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일반 시민이 언론매체에 부담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액세스권의 보호도 중요하다. 이미 폐지된 법률이지만 言論基本法이 언론에 대하여 과도한 공적 책무를 지운 것으로서 비판받아 온 점은 그러기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 言論自由와 國家利益

國家利益이란 용어 자체가 實定憲法上 자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4장(國會)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한다」(46조 2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를 언론자유와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때의 국가이익의 범주는 대단히 넓어서 여기에는 헌법전문에 나타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우리 국민의 안전·자유·행복 등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 등도 國益의 내포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言論機關의 報道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국익에 이바지해야만 할 것이고, 그때의 國益이란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이자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국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과 조화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37조 2항)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의 요구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연결되는 나아가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등을 침해할 수 없도록(21조 4항) 하고 있다. 다만 公衆道德·社會倫理와 같은 것들은 언론기관이 특히 다른 私人的 權益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언론자유에 直接的인 對私人的 效力을 인정하는 규정에 해당된다.

언론보도가 국가권력이 나뉘대로 판단하는 국익에 충돌이 된다고 지적되어서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보다 직접적인 경우는 특히 民主的 基本秩序라든지 國家安全保障 등에 관계될 때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언론, 예컨대 反國家團體 등의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를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으로써 행한 자는 처벌(국가보안법 7조 5항)될 뿐만 아니라,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國家秘密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도도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언론기관의 국가비밀 누설금지와 特殊한 身分關係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의 그것이 똑같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라든지 국가긴급시의 경우에도 역시 다르게 된다.

이하에서는 평상시 언론기관의 國益關聯報道的 범위와 한계 등을 國內外의 實定法과 몇가지의 判決을 통해서 본다.

II. 國益報道와 關聯한 實定法의 內容

1. 反民主的 言論報道와 國益

반민주적 언론보도는 형법이나 균형법상의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사항들의 보도나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관련된 法規定 內容의 보도 등을 행할 때에 일어난다.

이 점에 대해서, 예컨대 大法院(1969. 4. 29)은 간첩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新聞報道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 간첩을 역이용하려는 공작이 와해되고 반공법에 저촉되니 報道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써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1970년에 大法院은 조총련 산하 월간지 사장의 사회하에 동 연맹 중앙부 의장과 동 잡지에 게재할 신춘대담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였거나 동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憲法裁判所는 1990년 4월 2일 선고한 89헌가113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限定合憲決定을 통하여 단순한 고무·찬양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表現의 自由를 침해하는 일이어서 위헌이지만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憲裁의 決定 취지는 言論의 自由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법운영 당국에 의한 恣意的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反民主的 言論報道的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시켜 그 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한 國益報道的 許容範圍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國家秘密報道와 國益

(1) 國家秘密의 報道

國益관련 보도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판단과 국가권력의 입장에서의 그것이 상충될 소지가 가장 큰 것이 國家秘密에 대한 것이다. 즉, 언론사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증재하는 경우 국가보안법(4조 1항 2)에 의해서 처벌되는 바, 이 때 그 「國家秘密」에 대한 실정법상의 定義는 법률이 아니라 大統領令인 「保安業務規程」(1970. 5. 14 대통령령 제5004호, 1981. 10. 7. 승 제 10478)에서 내리고 있다.

즉, 「國家安全企劃部法」(1980. 12. 31. 법률 제3313호, 1981. 12. 31. 법 제3492호 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안기부는 국가기밀의 보안업무 및 형법·군형법상의 군사기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11조)고 하여, 특히 국가비밀 보도와 안기부 사이의 國益論爭이 예민한 문제로 될 소지가 크다.

어쨌든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국가의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에 기초하여 大法院(1964. 9. 22. 선고, 64도290 판결)은 국가비밀이란 군사상 기밀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의 각 방면에 관한 국가적 기밀에까지 확대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514 판결에서는 국내의 신문·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公知의 事實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비밀이 되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도284 판결) 및 심지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되는 사실도 포함시켜(1967. 11. 14) 그 범위가 너무 광범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서는 비밀의 구분을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I급비밀, II급비밀 그리고 III급비밀로 나누면서, 예컨대 III급비밀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하여 國家安保라는 애매한 개념에 의하여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國益關聯 報道가 제한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施行規則(1969. 5. 30. 대통령령 제25호, 1981. 10. 7. 승 제46호 개정) 제8조 제1항의 비밀세분류지침에서는 국가방위나 외교 이외에도 국가정책 내지 시책의 변동도 광범위하게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2) 軍事機密的 報道

형법(98조 2항)과 군형법(13조 2항)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을 敵國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바, 이 군사기밀의 정의에 대하여 大法院은 역시 국가기밀과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제되는 정보(1968. 7. 31)라고 한다.

이에 기초하여 「軍事機密保護法」(1972. 12. 26. 법률 제2387호, 1981. 12. 31. 법 제3492호 개정) 제2조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이에 관계되는 문서, 도표 또는 물건을 말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그 자세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1973. 8. 8. 대통령령 제6796호) 제2조 제1항은 군사기밀분류기준을 군사 I급, II급, III급비밀로 분류하는 데, 특히 군사 III급비밀에서는 누설되는 경우 군사방위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하여, 심하게 얘기한다면 군사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이

論報道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은 문제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있다.

III. 國益報道와 알 권리

1. 알 권리와 情報公開請求權

言論報道는 국가비밀 등에 관련된 情報의 公表와 관련하여 國益에 違背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제한되는 것인가. 즉, 그러한 국가비밀을 보도하는 것이 항상, 그리고 바로 국익에 배치되는가.

憲法理論上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국가비밀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그 보도로 해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끼칠 때에만 國益을 해치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할 수 있을 뿐 過剩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게 된다. 그런데도 앞에서 본 法令上的 形式秘의 분류가 너무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를 實質秘, 즉 非公知性和 要秘隱性에 의해서 조정해야 할 大法院은 그 범주를 더욱 확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국익과 관련한 言論報道의 범주는 협소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실정법과 大法院의 태도에만 맡기지 말고 과감한 思考의 轉換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정부보유정보는 公開가 原則이고 秘密은 例外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憲法裁判所가 1989년 9월 4일 선고한 88헌마22 결정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情報公開를 구할 權利이며, 그 제한도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그 개념의 폭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하여 보다 명확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 권리 침해라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判示했다.

憲法文言上 알 권리로서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는 그 인정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여 왔다. 먼저 그 인정근거로 원용되고 있는 조항이 헌법 제21조의 언론자유권

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이 언론의 자유는 중대 정보의 제공, 즉 意見表現法(Recht auf Meinungsäußerung)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정보의 수집·판단·전달 등 그 흐름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Recht, zu unterrichten)라는 용어(독일기본법 5조 1항 1문)도 두지 않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지울 수 있는가. 나아가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침해배제를 요구하는 消極的 防禦權(Abwehrrecht)의 측면을 넘어서 積極的으로 국가기관 보유정보의 공개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Leistungsanspruch)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 민주정, 사회복지국가 원리 등에서 일반적 근거를 들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기본원리에서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이 직접 나온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조항(10조, 21조, 34조 등)에 근거해서도 마찬가지이다. 憲法的 要請(Verfassungsauftrag)으로서만 가능한 그러한 권리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독일의 정보자유(Informationsfreiheit)는 알 권리의 금지를 넘어선 적극적 의견형성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는 정보취득을 위한 적극적 행동의 보장이라기 보다는 정보受取를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이상으로 教義的인 해석론상(dogmatisch) 국가에 대하여 情報請求(Auskunftsanspruch)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은 아닌 것이다.

2. 알 권리에 合致되는 國益報道

言論의 報道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이익이 크다면 국가비밀에 관련되는 사항이더라도 가능한 한 國益報道에 合致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더 큰 문제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국가비밀이 아닌 단순한 행정상 비밀, 즉 職務上 秘密임에도 그 보도가 國益에 반하는 것으로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 형법 제127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처벌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60조)이나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52조) 그리고 군인(군인복무규율 174조) 또는 수사관계자(형사소송법 198조) 등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여, 사실상 국가비밀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행정상·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언론보도가 될 수 없다.

나아가서 언론기관에 자료를 준 取材源의 보호를 위한 取材源秘匿權이 양심의 자유에 기초해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고, 언론자유에 근거해서는 利益衡量이라는 法院의 判決을 따라야 하는 데 사실상 비밀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태도에 미루어서 볼 때 취재원의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만큼 國益關聯報道의 범주는 협소해지기 마련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비밀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언론보도는 국가이익과의 형량관계에서 항상 양보되어야만 한다고 強辯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이 때에는 국가이익과 언론자유가 최대한도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憲法의 統一性을 가능케 하는 規範調和的 解釋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法院의 판단에 의거해서 본다.

IV. 國益報道에 대한 法院의 態度

1. 우리의 경우

(1) 「말」誌 報道指針揭載 事件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호까지 文化公報部 홍보정책실에서 한국일보 편집부로 내려 보낸 보도지침이 편집부기자에 의하여 民主言論運動協議會에 넘겨지고 이는 1986년 9월 6일 발행된 말誌 특집호에 「報道指針: 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형법상 비밀누설죄 및 국가모독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有罪判決이 내려졌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6. 3. 사건번호 87고단503).

判決文은 게재된 내용에 외교상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배포하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였다고만 할 뿐 국가이익과 언론보도의 상충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 예컨대 외무부가 이들 사항을 비밀로 분류했는가의 여부라든지 법원의 판단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 新東亞·月刊朝鮮 金大中拉致真相 揭載試圖 事件

신동아와 월간조선이 1987년 10월호에 1973년(8. 8~13)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모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李厚洛이 진술한 내용을 게재하려고 했으나, 1987년 9월 19일 문교부에서 事前에 게재불가를 통보하고 안기부직원이 인쇄를 중단시키자 기자들의 항의·농성 등 항변을 통하여 9월 27일야야 발간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공부는 이것이 국제외교상 중대한 국익손상을 초래하므로 언론자유와 보도범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기에 이의 게재는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53조의 「편집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 위배된다고 한 반면, 각 言論社와 大韓辯協(1987. 9. 25) 등에서는, 이는 공직수행과는 관련없는 범법행위에 불과하므로 직무상 비밀이라거나 국가이익은 될 수 없다는 등의 반론을 폈다. 다만 이들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에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당국의 국익이나 공익의 판단기준과 언론기관의 보도에 있어서의 그것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인가. 法院의 判斷 중에서 이들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본다.

(3) 大邱每日新聞의 盈德間諜報道 事件

대구지방법원은 1961년 10월 18일의 판결(65고8762)에서 보도된 사실은 이미 광범하게 알려진 사실이며, 언론은 국가안위에 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한 주의를 요할 뿐 防共과 보도가치를 比較較量해서 그 보도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기사(대간첩공작에 일부의 지장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수단으로써 대간첩공작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위험성이 있는 보도는)의 결과 해악의 중대한 발상이 긴급하고 절박하여 이러한 언론의 濫用으로 구제될 수 없는 불가피한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언론자유

를 제압할 위험이 있는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제2심인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抗訴棄却決定(1969. 11. 7. 선고, 68노451 판결)이 선고되고 검찰측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즉, 법원은 국익과 언론보도에 관하여 언론은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그 보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보도의 결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때에만 처벌받게 된다고 한 점이 특기할만 하다. 그러나 비교교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4) 東洋通信社 軍事機密漏泄 事件

1960년 6월 21일 일어난 동양통신사 군사기밀누설 사건에 대한 大法院의 判決(1972. 2. 29)에서는 言論報道的 無罪를 확정하면서, 국가기밀이라도 공개석상에서 토론된 것은 그 때부터 기밀성이 상실되며, 이를 보도하여 군기를 누설하고 이적행위를 했다는 犯意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정부가 報道管制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와 언론기관의 상호협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 국가안보 등의 국익은 국민들이 주어진 정보로 올바른 판단을 할 때에 가능함을 역설했다.

결국 國益關聯報道的 범위와 한계설정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 國益이나에 대한 견해의 충돌이 특히 심한 국가안보보장과 관계되는 국가비밀의 범위를 실정법상 축소시켜 규정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조화적 해석에 기초하여 언론기관의 보도가 결국에는 국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외국에서의 경우를 살펴 본다.

2. 日本의 경우

(1) 外務省秘密電文漏泄 事件

소위 西山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에서는, 오키나와 반환에 관련된 정부와 미국 사이의 밀약문서가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 폭로되자(1972. 3) 그 비밀누설자인 蓮見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죄로 그리고 西山기자를 그 교사죄로 구속한 것이다(1972. 4). 1974년 1월 31일 東京地方裁判所는 蓮見사무관을 유죄로 선고하고(이는 항소포기로 확정됨), 西

山기자는 日本最高裁까지 올라갔다.

1978년 5월 31일 재판소는 그 유죄를 선고하면서(1976(行)1581호), 비밀해당 여부의 판정은 司法判斷에 따르며 언론사의 國政報道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기에 언론자유 정신에 비추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 때 언론사의 국정에 관한 취재행위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대립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교사하더라도 그것이 진실로 보도의 자유로부터 오고 그 수단등이 法秩序 全體의 精神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사회관념상 시인되면 실질적으로 위법성을 결한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하였다.

이는 최고재판소가 1957년 10월에 일어난 不正考天國 掲載事件에 대한 판결(1970. 8. 20. 1965(行)52호)에서 공무원이 비밀취급된 문서를 월간지에 투고하고 단행본을 펴낸 것은 관직에 필요한 적격성을 결한 경우(국가공무원법 78조 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判示하였던 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본다.

(2) 스파이防止法案에 관련된 문제

다만 일본에서도 1985년의 제102회 국회에서 「국가비밀에관계된스파이행위등의방지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비밀을 '방위 및 외교에 관한 別表에 열거된 사항과 이러한 사항에 관계된 문서·도화 또는 물건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비닉을 요하며 公開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여, 이들 비밀의 외국통보, 탐지수집, 누설 및 그 미수·예비·음모·교사·선동 등 행위에 대해 사형까지 처벌토록 하는 등 오히려 종래 법원의 기준까지 후퇴시킬 수 있는 소지가 보이고 있어 역시 國益報道와 관련한 언론자유가 쉽사리는 정착되기 어려운 점을 보이고 있다.

3. 美國의 경우

때문에 미국의 경우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966년 情報公開法(FOIA)이 제정되어 정부기관의 보유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다만 예외적으로 국방·외교정책상의 이익이라든지 행정부내의 직원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언론기관의 보도는 그 폭이 넓을 수 밖에 없었다.

(1) Pentagon Case

이러한 實定法下에서 1970년 6월 13일 뉴욕타임즈지가 미국의 월남정책 결정 과정사라는 國防省秘密文書를 게재하였는데, 6월 18일 워싱턴포스트지도 이를 게재하였다. 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외교·국방에 관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하여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져오는 정보의 공개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한 반면, 신문사 측은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국민의 알 권리의 수탁자로서의 신문의 지위와 언론에 대한 事前抑制 禁止를 내세웠다.

이러한 New York Times Co. v. U.S., 403 U.S. 713(1971) 및 U.S. v. The Washington Post Company et al Case에서 法院의 意見(per curiam opinion)은, 사상표현에 대한 여하한 사전억제의 조치도 그 합헌적 유효성에 반하는 상당한 추정을 받으며(이는 Bantam Book Inc. v. Sullivan, 372 U.S. 58, 70(1963) 및 Near v. Minnesota, 283 U.S. 697(1931)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정부는 그러한 억제조치의 강제를 위하여 정당화하여야 할 강한 立證責任을 부담한다(이는 Organization for a Better Austin v. Keefe, U.S. (1971)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하여 신문사측의 승소를 내렸다.

그런데 외교·국방에 관한 국가기밀보호와 보도의 자유에 관하여 Potter Stewart 대법관은 국제관계와 국방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임의 보호는, 법적 문제가 아닌 통치적 특권의 문제로서, 행정부의 명령의 선포와 집행을 통한 행정부의 憲法的 義務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John Harlan 대법관은 사전의 공개가 유해한 영향을 미치느냐의 평가권한은 행정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에 대항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교관계사항이 대통령의 정당한 외교관계 권한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최초의 결정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Hugo Black 대법관은, 언론은 治者를 위하여가 아니라 被治者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데, 이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서, 자유롭고 구속없는 언론만이 효과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폭로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국가적 안전이란 용어는 광의적이고 모호한 일반개념이며

代議政을 희생하고 군사·외교상 비밀을 보호한다는 것은 공화국을 위해 진정한 안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William Douglas 대법관은 정부의 비밀은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며 영속적인 관료주의적 과오이고, 공적 사건에 대한 공개토론은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이후 Marchetti v. U.S., 466 F. 2d 1309(4th Cr.), Cert. Denied, 409 U.S. 1063(1972)에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그리고 이미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한하여 출간 등 보도가 금지된다고 하였다.

또 Snepp v. U.S., 595 F. 2d 926(4th Cr, 1979)와 Snepp v. U.S., 456 F. Supp. 176(E. D. Va 1978) 그리고 Morison v. U.S., 622 F. Supp. 1009, 1010(D.Md 1985) 및 Progressive v. U.S., 467 F. Supp. 990(W.D.Wis 1979) 등에서는 국가비밀로 분류된 것이 없었음에도 정부입장에서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보고, 예컨대 (원자력에너지)法에서 그 公表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라면 사전제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정치가 않다.

즉, 사회·정치적 상황변화가 國益關聯報道的 評價에도 그 미치는 바가 큰 것이다.

V. 結 論

국익보도에 관련한 실정법률과 법원의 태도는 특히 우리의 경우 秘密守護의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의 국방부 기밀누설에서도 보듯이(시노하라 사건) 과도한 비밀엄수의무는 국가정보가 베일속에서 썩게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언론의 보도기능이 국가,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고 볼때 국가이익과 언론은 비록 외면상으로는 상충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 國益을 수호한다는 점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 권리도 언론의 자유도 무제한한 것은 아니기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는 범주내에서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고 그 정도의 제한 이외에는 국익개념의 과도한 확장과 그에 따른 언론보도의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도 情報公開法의 제정은 國益報道的와 관련한 司法府의 진보적 자세와 더불어서 시급한 일이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어떤 때의 양형의 문제인가? < 510 의 제한기권권

1. 의 의

현행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및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본인 또는 그 책임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과 그릇된 정보의 정정이나 누설방지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다.

2.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관계

첫째, 명예훼손은 ^{진실은 예외로, 권리} 사람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성립요건으로 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사회적 평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사(私事)의 공표등으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또는 자유로운 사생활행위가 방해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성립한다. 둘째, 명예훼손의 경우는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것이 면책사유가 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표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며 진실인 경우에도 공표당하고 싶지 않은 사사를 공개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면 권리침해가 성립한다. 이 권리는 명예훼손죄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없는 영역까지 인격을 보호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리는 어떤 사항의 공표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이 자유로운 사생활행위를 방해받거나 간섭당하는 경우에도 권리침해가 성립한다.

3.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그 보호법익과 침해행위의 유형을 표준으로 할때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 명예나 신용의 불가침, 인격적 징표의 불가침 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본인이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은 신문, 잡지, 영화, TV 등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내용 그대로 공개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생활의 비밀의 공개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사생활의 공개가 사실을 공공연하게(공개된 장소에서) 폭로하는 것(공표)이어야 하고, 한 두 사람에게의 폭로가 아니어야 하며, ②폭로된 사실은 사적 사항이어야 하고 공적 사실의 폭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공적 기록부에 수록된 사항일지라도 때로는 사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없지 않다. ③공개된 사실은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공개된 사적 사항이 원고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 즉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인의 숨겨진 과거의 사실을 영화화하는 행위, 명예나 감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의 것이라 할지라도 실명을 표기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작품에서 기술하는 행위, 여인의 골반부위의 X광선 사진을 지상에 공개하는 행위, 기형적인 코의 사진을 병리학잡지에 게재하는 행위, 제왕절개수술을 촬영하여 일반 공중에게 상영하는 행위,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을 동안에 촬영한 추한 안면의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 그 일례이다.

둘째, 허구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세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알게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 오인할 수 있는 공표는 통상인의 감수성으로 보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 다시 말하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의 의견이나 발언이 아닌 것을 그의 것인양 허위로 발표하는 행위, 광고전단에서 상품에 만족하는 사람의 명단에 그 성명 또는 사진을 무단히 나열하는 행위, 상이한 상황에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인상을 주고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두사람의 것외는 오려 내고 게재하는 행위, 저속한 외설적인 기사를 장식하는데 사진을 사용한 경우 등이 그 일례이다.

4.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은 보호법익과 침해행위의 유형을 표준으로 할 때 사생활의 평온의 불가침,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또는 사생활자율성)을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표
사생활의 비밀
공개

사생활

수인할 수 없는 정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
사회통념상

사생활의 자유
불가침
표준

Kim and Jang
사생활의 자유

첫째,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이 적극적으로 침해.간섭받거나 소극적으로 감시.도청.도찰하는 행위 등에 의하여 교란됨으로써 불안.불결감을 유발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교란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통상인이 수인할 한계를 넘을 정도로 감정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교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사적 사항이거나 사적 권익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호텔에 투숙한 여인이 혹은 매춘행위를 하고 있거나 않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무단 침입하는 행위, 상점에서 상품절취의 혐의를 받은 여인의 쇼핑백을 상점주인이 불법으로 수색하는 행위, 방에다 마이크 장치를 하고 옆방에서 전화를 도청하는 행위, 타인의 전화를 도청하여 속기하는 행위,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사설탐정이 산업재해의 원인조사를 위하여 부부의 동태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행위, 은행예금을 부당하게 조사하는 행위 등이 그 일례이다.

둘째,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사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또는 사생활자율성)을 억제 또는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사회윤리에 반하지 아니하며 헌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생활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구상하고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는 법적 안정성의 보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주거지역에서 가옥형태를 일정한 것으로 규제하거나, 산책.등산.낚시 등 취미생활을 간섭.방해하거나 의복이나 모발의 형태를 일정한 것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그 일례이다.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헌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가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그것과 수사관과의 관계, 그것과 국회의 국정조사권과의 관계 여하이다.